

1996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심사보고서

1. 심사경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 9. 2 충청북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1997. 10. 27

다. 상 정 일 자 : 제14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7. 10. 29)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박 경 국)

1996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8억 1,141만 8천원으로 그중 유족보상금의 19건에 46억 9,711만 5천원이 지출되고 1억 1,430만 3천원은 불용액임.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비 고
예비비	4,811,418	4,697,115	114,303	

3. 검토보고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 재 평)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태 또는 실제 예산집행단계에서 과부족 현상이 발생할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출예산을 보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음.

예산은 수입·세출의 견적으로 아무리 정확하게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생겨나기 마련인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제도가 있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에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6~8월에 집중 지출되었고 재해대책 예산의 일부는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3억 8,000만원을 삭감한후, 예비비에서 4억 7,351만 7천원을 지출한 사례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의회에서 부결한 용도에의 지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회관 신축설계비를 지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선 지출 후 승인이지만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선승인을 받는 것이 행정선례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임시회 회의가 있었음에도 의회에 보고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집행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특별회계>

가경 3지구 공동주택지 용지분양관련 선수협약 해제에 따른 전부금 청구사건관련 항소 제기공탁금으로 이전이 없음.

4. 주요지적사항

- 없음.

5. 심사결과

- 도원안대로 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 1.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부. 끝.